

총장선임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새빛학원 정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새빛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 설치 경영하는 안산대학교의 장을 임용함에 있어 총장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임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총장후보자의 자격) ① 총장후보자는 학교법인새빛학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계승·실천하며, 대학의 발전과 재정의 확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.

1. 안산대학교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직급이 부교수이상이며 학내 실·처장 보직경력이 있는 자
2. 교육이념이 투철하고 총장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사로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자

② 총장후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, 장로 또는 권사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③ 현직 법인이사장과 현직 법인 이사장의 직계 존·비속은 총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제3조(총장후보자의 공모절차) ① 이사장은 현직 총장 임기만료 90일전에 총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공고는 대학 게시판과 안산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국내 일간지에 공고 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유관기관 또는 저명인사 등에게 총장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발송할 수 있다.

③ 공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.

④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교법인 새빛학원의 건학이념 실현 방안
2. 대학 경영 방안 및 발전 계획
3.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와 신앙고백서 및 세례증서
4. 이력서, 졸업 및 학위증서, 경력증명서, 호적등본 각 1부

제4조(총장후보자 추천기구) ①후보의 난립방지 및 효율적인 선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.

1. 법인 내 추천기구 ;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인사위원회에서 후보를 2인 이내로 조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. 이 경우 외부인사로서 총장후보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제3조 제4항에 의한 구비서류를 공모기한까지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2. 대학 내 추천기구 ; 대학은 교수회에서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제기한 요건을 갖춘 자를 총장후보로 추천할 수 있으며, 추천대상후보는 제3조제4항에 의한 구비서류를 공모기한 10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총장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총장 후보 추천과정을 거쳐 후보를 2인 이내로 조정하여 이사회의 인사위원장에게 공모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현직 총장이 중임을 원할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총장은 공모기한까지 이사회의 인사위원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사 등) ① 이사회의 인사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서류접수, 심사 및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충서류를 요구하거나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.

② 이사회의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장후보대상자와 면담을 하고 소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이사회의 인사위원회는 총장후보자의 심사과정에서 총장후보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며, 명예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어야 한다.

제6조(총장의 선임) ① 총장은 이사회에서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출한다.

② 총장의 선출은 제4조의 총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단기명으로 투표하여 이사 정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하되,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순위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총장으로 결정하며 각 후보자에 대한 득표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.

③ 추천한 총장 후보자가 단수일 때에는 이사회는 추천된 총장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으며, 천거된 자에 대한 후보 추천 여부는 이사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④ 총장후보자가 정한 기일 내에 추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한다.

⑤ 총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공석이 된 때에는 이사회는 즉시 직무 대행자를 임명하고 이 규정에 의거 후임 총장을 선임한다.

제7조(선거운동금지사항) 후보자, 후보추천자, 교직원은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
2.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배포, 게시 등 일체의 행위
3. 당선 후 보직, 승진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4. 학교 구성원을 선동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
5. 공식회의석상에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

제8조(제재) 제7조의 선거운동금지규정에 위반한 후보자 및 위반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때에는 1차 경고를 할 수 있고, 재차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